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10
----------	-------

발의연월일 : 2024. 3. 8.

발 의 자 : 윤주경 · 이현승 · 서병수
강기윤 · 이주환 · 김희곤
유경준 · 최승재 · 최형두
박대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침해행위 유형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민

원을 방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통한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2호나목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활동”을 “교육활동(「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면담·민원처리·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를 “교원의 교육활동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신고·고소·고발·허위제보 및 손해배상의 청구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u>교육활동을</u>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 ----- <u>교육활동(학</u> <u>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u> <u>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u> <u>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및</u> <u>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상담·면담·민원</u> <u>처리·행정업무 등을 포함한다.</u> <u>이하 같다)</u> -----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 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 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 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 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 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 ----- ----- ----- ----- ----- -----

등이 <u>교육활동 중인 교원에</u>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u><신설></u> <u>나.·다.</u> (생략)	---<u>교원의 교육활동에</u>-----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u>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u> <u>신고·고소·고발·허위제</u> <u>보 및 손해배상의 청구</u> <u>다.·라.</u>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	---